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에게 정보,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청소년 문화활동 육성,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유관기관 연계 사업 등 청소년업무의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으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안정성 확보

다. 위탁시설 개요

- 1) 시설명 :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 2) 위치 :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2017(우항공원 내)
- 3) 시설규모
 - 대지면적 : 61,079.9m²
 - 연면적 : 3,685.96m²(지상4층)
- 4) 설치비 : 100억원(국비 5, 도비 75, 시비20)
- 5) 주요시설

층별	연면적	시설내용
1층	1,157.23m ²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2층	797.45m ²	로비, 사무실, 북카페, 상담센터, 방제실, 통신실
3층	1,123.26m ²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아카데미 교실, 분임회의실, 진학사무실
4층	608.02m ²	직업체험실, 미디어카페, 휴게실

라. 위탁기간 : 2022년 10월 ~ 2025년 10월(3년)

*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 평가 후 위원회 심의 거쳐 재위탁 가능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심의·선정

바. 위탁방법 :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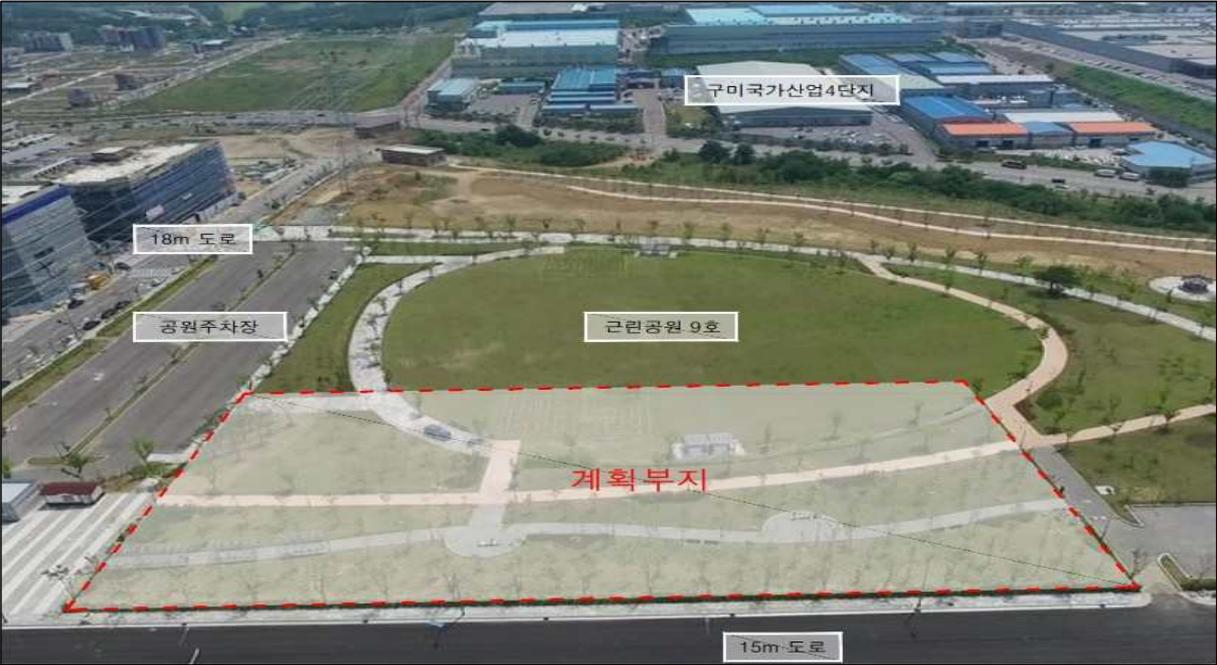
사. 위탁 소요예산 (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국비지원사업비
1,187	642	241	78	226

사진대지

□ 위치도



□ 조감도



재 산 현 황

구 분		건 물		토 지		비 고	
		동 수	연면적 (m ²)	필 지	면적 (m ²)		
합 계		1	3,685.96	1	61,079.9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1	3,685.96	1	61,079.9	공원부지 내 건물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일반 재산	행외공유 재산					

위탁시설 현황

구분	연면적(m ²)	건축물 내역(면적 m ²)
계	3685.96m ²	
지상1층	1,157.23	댄스연습실 1(95.2), 댄스연습실 2(113.76) 노래연습실(97), 음악연습실(107.67) 체력단련실(127.67), 물품보관실(30.53) 공용공간(585.40)
지상2층	797.45	사무실(86.85), 회의실(16.83), 방제실(25.74) 통신실(13.65), 상담센터(37.46), 북카페(178.51) 공용공간(438.41)
지상3층	1,123.26	동아리실1(35.28), 동아리실2(31.68), 사무실(27.36) 아카데미교실1(51.84), 아카데미교실2(51.84), 분임회의실1(17.16), 분임회의실2(16.12) 진학사무실(110.11), 다목적강당(331.80), 공용공간(450.07)
지상4층	608.02	직업체험실1(66.96), 직업체험실2(64.80) 미디어카페(139.39), 휴게실(33.28), 공용공간(303.59)

관 계 법 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현 명 속
	담 당	강 진 선
	담 당 자	손 지 완 (480-2725)